

##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00. 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할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및 공공상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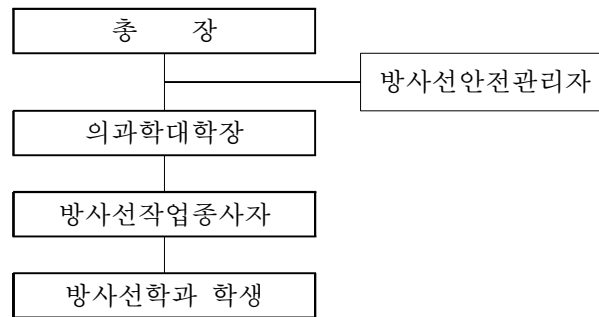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방사선시설과 그 운영,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 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8.>

② 본교 소속이 아닌 사람이 본교의 방사선시설에 출입하거나 본교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방사선원에 의해 방사선을 피폭할 경우에는 본교에 소속하는 자에 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물질”이란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최소수량 및 최소농도를 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6.2., 2017.5.1.>
2. “방사선발생장치”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방사선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면제하지 아니한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4.6.2.>
3. “방사선원”이란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4. “방사선시설”이란 방사선을 취급하는 장소와 설비로써 원자력법규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폐기시설을 말한다.
5. “방사선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효율적인 방사선관리를 위해 의과학대학장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6.2., 2017.2.8., 2017.5.1.>
6. “행위”란 방사선을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방사선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방사선관리조직)**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개정 2012.6.28., 2014.6.2., 2017.2.8.>



**제5조(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장

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2.8.>

2. 의과학대학장 <개정 2012.6.28>

총장을 보좌하고 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2.8.>

3. 관리자 <개정 2017.2.8.>

가. 총장 및 의과학대학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6.2.>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4) 방사선시설 사용의 기준 준수 및 계속 유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종사자(지도교수) <개정 2017.2.8.>

가. 관리자 및 관련 부서장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7.2.8.>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리자 및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17.2.8.>

5. 방사선학과 학생(수시출입자) <신설 2017.2.8.>

가.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 지도하에 방사선발생장치 실습교육을 수행하되, 수시출입자로서

Shooting과 같은 방사선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7.2.8.> <개정 2017.5.1.>

**제6조(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관리자는 원자력관계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7.2.8.>

② 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지정서를 작성하고 일시적으로 제5조제3호에 의한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신설 2019.5.1.>

1. 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의 작성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며, 대학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득한 후 방사선학과에 비치한다. <신설 2019.5.1.>

⑥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5.1.>

1.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제6조제4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관계법령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8., 2017.2.8.>

**제7조(구매절차)**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수령은 구매담당자가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한다. <개정 2017.2.8.>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자 또는 구매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 관리자 또는 구매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하여 구매신청자에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제8조(사용기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그 출입구 부근에 출입자의 안전수칙을 게시한다.
3. 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7.2.8.>
4.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다.

5.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교육 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기기를 조작하며, 인체 조사를 절대 금하고 교육용 인체모형(phantom)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6.>

**제9조(보관기준)**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할 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관리자가 보관한다. <개정 2017.2.8.>

**제10조(폐기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폐기는 구체적인 폐기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폐기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 후 폐기한다.

**제11조(관리구역)** ① 다음의 장소는 관리구역으로 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 \mu\text{Sv}$ (마이크로시버트)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본조개정 2017.5.1.]

②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관리구역의 경계로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는 관리구역임을 알리는 소정의 표지를 한다.
2. 시설의 방사선환경 특성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방사선준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종사자 이외의 자는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객 등 일시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2조(관리구역 출입)** ① 종사자 이외의 자는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수시 출입자가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도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의과학대학장 및 관리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2.8.]

**제13조(선량한도)**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5.1.>

② 종사자는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긴급 투입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③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선량한도는 연간  $1\text{mSv}$ 로 한다.

**제14조(측정)** ① 방사선량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 매월
2. 관리구역 : 매주

② 제13조의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2. 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출입할 때마다

3.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출입할 때마다

③ 방사선량은 방사선 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한다.

**제15조(개인감시)** ① 모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게 외부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지급하여 개인피폭 선량을 측정한다. <개정 2017.2.8.>

② 외부피폭선량 측정주기는 개인선량계 서비스 제공자의 절차에 따른다.

③ 개인피폭선량은 수시로 종사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다.

④ 개인피폭선량 기록은 해당 종사자의 예상 수명기간동안 보존하며 중앙등록센터로 자료제출은 측정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한다.

**제16조(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제1호]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3.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제1호]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건강진단 결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분기 및 해당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본조개정 2017.5.1.]

**제17조(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 <개정 2017.2.8.>

4.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장부) <개정 2017.2.8.>

5.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6. 방사선량을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을 측정장부)

7.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구매요구서)

8. 실습교육 결과물(필름 및 이미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8.>

9.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8.>

② 제1항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 중 종사자에 대한 것은 해당 종사자의 예상수명 기간 동안 보존하며 제6호의 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관리자의 서명, 부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7.2.8.>

**제18조(교육훈련)** ① 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보수 등을 위한 방사선시설 출입자, 시설전학자 및 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사선 피폭시 올바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 취급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4.6.2., 2015.8.26., 2017.2.8.>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6.2., 2015.8.26.>

| 교육구분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
| 기본교육 | 8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 직장교육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1. 기본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미달 시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2.> <개정 2015.8.26.>

2. 직장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 <개정 2015.8.26.>

3. 신규교육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4시간 이상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은 매년 각각 3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6.>

③ 관리자는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종사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숙지 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14.6.2., 2017.2.8.>

④ 관리자는 매년도 직장교육 계획(교육일정, 교육대상별 교재,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2017.2.8.>

**제19조(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 등이 적절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방사선 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이 특정 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

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방사선시설이 지진, 화재, 홍수, 태풍 및 유해기체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 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개정 2014.6.2.>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22조(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대피, 소화, 피난 및 일반인이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조치를 위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신고한다. <개정 2014.6.2.>

1. 원자력 관계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사선발생장치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개정 2017.5.1.>
4. 방사선 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원자력 법령에서의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23조(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
4. 만18세 미만인 자
5.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24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제 8조, 제21조, 제22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lt;개정 2017.5.1.&gt;

## 선량한도(제13조 관련)

(단위: 밀리시버트)

|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          |
|------------------------------------------------------------------|---------------------------|--------|----------|
|                                                                  |                           | 수정체    | 손·발 및 피부 |
| 1. 방사선작업종사자                                                      |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 연간 150 | 연간 500   |
|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사람 | 연간 6                      | 연간 15  | 연간 50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                                               | 연간 1                      | 연간 15  | 연간 50    |

## 비고

1. “선량한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9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선량한도는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제2호에서 “운반종사자”란 방사선관리구역 밖에서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3호의 유효선량한도값에도 불구하고 피폭방사선량의 합을 5년간 평균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을 유효선량한도로 한다.
5. 제1호의 유효선량한도란 및 비고 제4호에서 “5년간”이란 1998년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5년마다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제2호] &lt;신설 2019.5.1.&gt;

|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br>(제68조의4제2항 관련) |                                              |                                                                                                                                                              |
|-----------------------------------------------|----------------------------------------------|--------------------------------------------------------------------------------------------------------------------------------------------------------------|
| 구분                                            |                                              | 기준                                                                                                                                                           |
| 허가<br>사용자                                     | 1. 생산 또는 판매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br>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 2. 사용                                        |                                                                                                                                                              |
|                                               |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
|                                               |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br>자특수면허를 소지한 방<br>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
|                                               | 2) 1)이외의 면허 또는<br>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br>전관리자의 대리자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br>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 나) 인체 외에<br>사용하는 경우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br>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 3. 이동사용                                      |                                                                                                                                                              |
|                                               |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br>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br>업장의 경우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 나) 가) 이외의 경우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br>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            |                                                                                                                                                                                                                     |
|-----------|------------|---------------------------------------------------------------------------------------------------------------------------------------------------------------------------------------------------------------------|
| 신고<br>사용자 | 사용 또는 이동사용 | <p>가.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p> <p>나.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
|-----------|------------|---------------------------------------------------------------------------------------------------------------------------------------------------------------------------------------------------------------------|